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8월 9일
- 회부일자 : 2001년 8월 10일

3. 제안이유

-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 개최지를 개발구역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인근지역을 포함한 읍·면·동으로 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공청회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함

- 조합의 정관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도록 정함

5. 검토의견

-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도시개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과 이상인 경우에 대한 공청회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지역 주민의 개발사업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